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25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2) 제 출 일 : 2022. 8. 29..
- 3) 회 부 일 : 2022. 9.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입법예고 (2021. 11. 1.~11. 17.) 결과: 의견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보건복지부 협의: 협의완료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¹⁾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촉진사업의 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경제활동촉진사업 확대(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신설)

-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직활동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추가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²⁾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의 입법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u><신설></u></p>	<p>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제2항3)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

-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에게 취업 준비 비용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 까지 지원할 계획임.

- 또한 현행조례 제6조제5항4)에 따른 서울우면업 인턴5)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근로계약 체결 직후 3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은 바 집행기관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조건 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구직의사가 있는 서울시 경력단절여성등	'22년 서울 우면업 인턴(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규모	5,000명	100개 기업(인턴 채용 기업)
지원조건 (자격조건)	① 구직 의지가 있는 만30~49세 경력단절여성등 ②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③ 서울시 거주자	4대 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수 5~1,000인 미만 기업체
지원내용	최대 90만원(30만원*3개월) 지원	300만원(100만원*3개월)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 (현금지원)	정규직 근로계약(1년 이상) 체결 직후 3개월 지원

4)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5) 서울우면업인턴십 사업은 ▲직무 관련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만 30-49세 미취업 서울시 거주 여성 또는 ▲ 관련 직업훈련교육과정(60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 거주 여성이 현장실습(일경험) 3개월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2022년 시급 10,766원)으로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 동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완료”⁶⁾되었는 바, 기존의 사회보장과의 중복성이나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예산액이나 산출근거, 사업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명단 공유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필요’하며,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중복·반복 수혜를 방지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중복·반복 수혜의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정부지원사업 등의 중복 참여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복 및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방지 (안 제6조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

6)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1130, 2022.3.30.)

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7) 및 제113조제1항8)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시민을 대상으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9)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법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문 상 인용하고 있는 안제6조제2항은 경제활동촉진사업

-
- 7)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9)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그 외의 사항

- 동 개정안의 상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시행 2022. 6. 8.] [법률 제18549호, 2021. 12. 7., 전부개정]으로 전부개정되어 제명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 등이 변경된 바, 추후 개정안의 부분에 전부개정법을 반영하는 등의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3 종합 의견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해 고용 취약자로 내몰리는 등 서울시 여성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제활동촉진사업을 확대하려는 동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중복·반복 수혜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